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상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추가 지급 근거규정 신설 (안 제2조제4호 및 안 별표3)
-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별첨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수의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)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상향 지급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등 가축방역업무 및 비상근무를 24개월째 실시 중이지만 정원(4명) 대비 현원(3명)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강도 및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수의직렬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.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하여 현행 월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연차별 증액을 통하여 월 50만원 확대 지급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의무직렬과의 수당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